

## 〈 2020년도 제6차 규정 제·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 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교무처 (교육혁신 지원센터)	31	[6-0-23]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		P.1
	32	[4-3-2]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		P.9
	33	융합교육과정 운영규정	○			P.19
계			1	2		

#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1. 제안이유

-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규정 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교육혁신지원센터는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된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관련조항 : 제2조(기능)

나. 교육혁신위원회

- 관련조항 : 제1절(교육혁신위원회)

다. 교육혁신평가위원회

- 관련조항 : 제3절(교육혁신평가위원회)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학칙,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라. 기 타 : 없음

붙임 1.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자구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u>NCS 기반</u></p> <p style="text-align: center;"><u>직업기초</u></p> <p style="text-align: center;"><u>NCS운영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NCS교양·직업기초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NCS평가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NCS학사정보시스템</u></p>	<p style="text-align: center;">자구수정</p> <p style="text-align: center;"><u>역량기반</u></p> <p style="text-align: center;"><u>교양·직업기초</u></p> <p style="text-align: center;"><u>교육혁신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교양·직업기초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교육혁신평가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역량기반교육시스템</u></p>
<p style="text-align: center;"><u>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u></p> <p>제1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센터 운영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li> <li>5. (생략)</li> </ol> <p>제12조(실무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은 학과별 <u>NCS</u> 전담교수로 한다.</p> <p>③ 각 학과는 별도의 <u>NCS 기반</u> 교육과정위원회를 편성·운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역량기반</u> 교육품질관리규정</p> <p>제1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센터 운영규정 <u>및 소관 규정</u>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li> <li>5. (현행과 같음)</li> </ol> <p>제12조(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은 학과별 <u>역량기반 교육과정</u> 전담교수로 한다.</p> <p>③ 각 학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위원회를 편성·운영한다.</p>

# 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규정

제정 2017.08.14      개정 2017.12.06  
개정 2018.10.19      개정 2019.09.19  
   개정 2020.00.00

## 제1장 교육혁신지원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육혁신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19.>

**제2조(기능)** 교육혁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산업과 연계된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09.19.>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9.09.19.>

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9.19.>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편·운영 기본지침 수립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차별 개편·운영계획 수립
3.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지원
4. **역량기반** 직무수행·직업기초능력 운영 및 평가계획 수립
5. 직업기초능력향상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6.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계획
7. **역량기반**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주요정책개발 및 지원
8. **역량기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과정 지원계획 수립
9. 기타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양·직업기초교육팀)** ① **역량기반**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위해 센터 내에 **교양·직업기초교육팀**을 두며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양·직업기초능력** 교재연구 및 개발
2. **교양·직업기초능력** 교과목 강의
3. **교양·직업기초능력** 교과목 강의자(전임 및 비전임)교육
4. **교양·직업기초능력** 교육방안의 지속적 개선
5. 기타 **교양·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에 관한사항

② **교양·직업기초교육팀**은 본교 전임교원 및 초빙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06.>

**제6조(위원회)** ①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구성,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2장에 따른다.

**제7조(재정)** 본 대학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 제2장 위원회

### 제1절 교육혁신위원회

**제9조(설치)** 역량기반 교육과정(전공 교육과정 포함)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본부에 **교육혁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9.>

② 위원은 산업계인사, 외부전문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0.19., 2019.09.19.>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9., 2019.09.19.>

**제11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과 관련된 주요정책사항
3. 센터의 자체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규정 및 **소관 규정**의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00.00.>
5.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아래에 실무 위원회를 두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09.19.>

② 위원은 학과별 **역량기반 교육과정** 전담교수로 한다.<개정 2020.00.00.>

③ 각 학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위원회를 편성·운영한다.<개정 2020.00.00.>

### 제2절 교양·직업기초위원회

**제13조(설치)** 역량기반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양·직업기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교양·직업기초**교육팀, 외부전문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2.06., 2019.09.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9.19.>

**제1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량기반**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역량기반**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역량기반**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3절 교육혁신평가위원회

**제16조(설치)** 역량기반 교육과정운영의 심의·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외부전문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9.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09.19.>

**제18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평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 방법·개선에 관한 사항
3. 역량기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역량기반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8조의2(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3장 직무능력성취도평가

**제19조(목적)** 직무능력성취도평가는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능력성취도”는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전공능력)의 교과목 평가 결과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한 값이며 학생별, 학과별, 대학 전체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2. “직무능력향상도”는 연차별로 직무능력성취도의 증감을 산출한 값이다.

**제21조(평가수행)** ①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향상도 평가는 **교육혁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2조(평가영역)** ①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전공능력)을 평가한다.

② 직무능력성취도는 학생 개인별, 학과별, 대학 전체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다.

**제23조(평가시기)** ① 학생 개인별 직무능력성취도는 매학기 말에 누적하여 산출한다.

② 대학 전체 및 학과별 직무능력성취도는 매년도 2학기 말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누적하여 산출한다.

**제24조(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① 학생 개인의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향상도는 학기별로 점검 및 관리되어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과의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향상도는 학과 차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차기년도 학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③ 대학 전체의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향상도는 대학 차원 교육과정의 교육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제2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능력성취도 및 직무능력향상도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장 직무교육품질관리 <개정 2017.12.06.>

**제26조(목적)** 직무교육품질관리는 본 대학교 직무교육과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6.>

**제27조(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 ①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업무는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학과의 교육과정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 수행
2. 학과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입력

③ 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를 위한 회의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8조(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 ① 대학 전체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업무는 **교육혁신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2. 대학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3. 대학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③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9조(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 ① 모든 교원은 매 학기의 성적처리 종료 후 **역량기반교육시스템**에 교과목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입력해야 하며, 학과장은 매 학년도 성적처리 종료 후 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학과CQI)를 **역량기반교육시스템**에 입력한 후 **교육혁신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학과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개선방안
3.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평가 및 그 개선방안
4.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에 대한 교육과정개선 반영 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5. 기타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30조(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 ①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매 학년도 성적처리 종료 후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각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 평가
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 평가
3.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평가
4.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에 대한 학과의 평가와 그 결과의 교육과정 반영 여부 평가
5. 직전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③ **교육혁신평가위원회**는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의 결과를 담은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한다.

**제31조(교육품질개선계획)** ① 학과 및 센터는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에 따라 교육품질 개선계획

을 수립한다.

② 교육품질 개선계획은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대학 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 배포 후 학과 및 관련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5장 교양·직업기초교육품질관리 <신설 2017.12.06.>

**제32조(목적)** 교양·직업기초교육 품질관리는 본 대학교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 ①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업기초교육과정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업무는 교양·직업기초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와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
2.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3.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입력

③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34조(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 ① 교양·직업기초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원은 매 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역량기반교육시스템**에 교과목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를 입력해야 하며, 교양·직업기초교육팀은 매 학년도 성적처리 종료 후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를 **역량기반교육시스템**에 입력한 후 센터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1.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개선방안
3. 교양·직업기초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평가 및 그 개선방안
4.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에 대한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개선 반영 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제35조(직업기초교육품질개선계획)** 센터는 교양·직업기초교육과정자체평가보고서에 따라 교육품질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 1. 제안이유

-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 이수구분을 추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하위역량 및 능력단위 요소 또는 행동지표 및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관련조항 : 제3조(용어정의)

나.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로 구분한다. 다만,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

- 1) 교양필수/교양선택(직업기초)(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
- 2) 전공필수/전공선택(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

- 관련조항 :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학칙, 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라. 기 타 : 없음

- 붙임 1.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자구수정</p> <p><u>NCS 기반</u></p> <p><u>NCS운영위원회</u></p> <p><u>NCS교양·직업기초위원회</u></p> <p><u>NCS평가위원회</u></p> <p><u>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u></p>	<p>자구수정</p> <p><u>역량기반</u></p> <p><u>교육혁신위원회</u></p> <p><u>교양·직업기초위원회</u></p> <p><u>교육혁신평가위원회</u></p> <p><u>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규정</u></p>
<p>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능력단위 요소 또는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li> </ol>	<p>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u>하위역량 및</u> 능력단위 요소 또는 <u>행동지표 및</u>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li> </ol>
<p>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2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2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u>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생 략)</b></p> <p>②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경우 적용하며, 전년도에 설정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개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 략)</li> <li>3.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의 신설 및 변경</li> <li>4. ~ 6. (생 략)</li> <li>③ ~ ④ (생 략)</li> </ol> <p><b>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b></p> <p>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은 <u>학과별로 설정된 인재양성유형별 산업체 및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라 한다)기반</u>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문식교육과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르며, NCS유보분야의 경우는 DACUM방식 등 자체직무분석에 의한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li> <li>2. (생 략)</li> <li>3. 교육과정은 교양·직업기초교과, 교직교과, <u>전공기초, NCS 전공교과, 현장중심 전공교과</u>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비율은 따로 정한다.</li> <li>4.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b>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현행과 같음)</b></p> <p>②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경우 적용하며, 전년도에 설정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개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b>하위역량</b>,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의 신설 및 변경</li> <li>4. ~ 6. (현행과 같음)</li> <li>③ ~ ④ (현행과 같음)</li> </ol> <p><b>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b></p> <p>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은 <u>대학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그리고 학과에서 도출한 전공역량 등을 반영한 역량기반</u>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문식교육과정은 별도의 지침에 <u>따른다.</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교육과정은 교양·직업기초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비율은 따로 정한다.</li> <li>4.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u>전공기초</u>로 구분한다. <u>다만,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u></li> </ol> <p style="margin-left: 2em;"><u>가. 교양필수/교양선택(직업기초)(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5. <u>현장중심 전공교과</u>는 NCS 기반으로 설계된 교과목이 아닌 산업체 현장중심 직무분석방법에 의한 교과목으로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포함한다.</p> <p>6. ~ 11. (생략)</p> <p>②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는 학과에서 발의하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여부는 학과에서 제출한 [별표1]의 NCS 기반 및 <u>현장중심</u>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를 대학의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b>제8조(위원회)</b>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NCS운영위원회, NCS교양·직업기초위원회, NCS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과별 <u>NCS 기반</u>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NCS운영위원회, NCS교양·직업기초위원회, NCS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NCS 및 <u>교육품질관리규정</u>을 적용한다.</p> <p>2. (생략)</p> <p>3. 학과 <u>NCS 기반</u>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가. ~ 나. (생략)</p> <p><b>제9조(교과목 이수) ①</b> (생략)</p> <p>1. ~ 2. (생략)</p> <p>3. <u>전공교과(NCS 및 현장중심)</u>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p>	<p><u>나. 전공필수/전공선택(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u></p> <p>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u>전공교과로 편성한다.</u></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는 학과에서 발의하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여부는 학과에서 제출한 [별표1]의 <u>역량 기반</u>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를 대학의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p> <p><b>제8조(위원회)</b>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u>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u>, 교육과정위원회, 학과별 <u>교육과정위원회</u>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u>의 구성 및 기능은 <u>역량기반 교육품질관리규정</u>을 적용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학과 <u>교육과정위원회</u>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가. ~ 나. (생략)</p> <p><b>제9조(교과목 이수) ①</b>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p>

현	행	개	정	안
<p>전공선택, 전공시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시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b>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b></p> <p>③ (현행과 같음)</p>		

[별표 1]

**NCS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

학 과 명	편성학년도	20 학년도	
편성구분	NCS( ) ( )	편성범위	개발 ( ) 개편( )
신청예산	원	예산준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 400,000원 이내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 600,000원 이내 * 기존 배정 예산 외 추가 신청 시 교육혁신지원센터 사전 협의 요망
용어정의	<p>[관련근거 : 교육과정편성및이수규정 제3조 / 제4조 /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 학과 신설 또는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반에 걸친 재설계</li> <li>- 교육과정 개편 : 학과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를 제외한 교과목의 신설, 삭제 등 편성 변경</li> </ul> <p>* 개편인 경우 이전 개발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전에 개발한 능력단위(책무)의 변경이 없거나, 교과목 변경이 극히 일부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에 유의</p>		
교육과정 개발/개편 목적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발/개편 방향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과정을 개발( ) / 개편( ) 하고자 신청합니다.			
20_년 월 일			
:장부학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별표 1]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

학 과 명	편성학년도	20 학년도	
편성구분	NCS( ) ( )	편성범위	개발 ( ) 개편( )
신청예산	원	예산준	<b>역량기반</b> 교육과정 개발 : 400,000원 이내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 600,000원 이내 * 기존 배정 예산 외 추가 신청 시 교육혁신지원센터 사전 협의 요망
용어정의	<p>[관련근거 : 교육과정편성및이수규정 제3조 / 제4조 /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 학과 신설 또는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반에 걸친 재설계</li> <li>- 교육과정 개편 : 학과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를 제외한 교과목의 신설, 삭제 등 편성 변경</li> </ul> <p>* 개편인 경우 이전 개발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전에 개발한 능력단위(책무)의 변경이 없거나, 교과목 변경이 극히 일부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에 유의</p>		
교육과정 개발/개편 목적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발/개편 방향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과정을 개발( ) / 개편( ) 하고자 신청합니다.			
20_년 월 일			
:장부학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소속교원 :	(인) (인)	원	소속교원 : (인) (인)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정 2010.07.01	개정 2010.12.24
개정 2011.12.30	개정 2013.05.01
개정 2013.12.04	개정 2014.02.07
개정 2015.04.30	개정 2016.04.20
전부개정 2018.10.19	개정 2019.09.19
개정 2019.12.27	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19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은 신설 학과 또는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에 있는 경우 또는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이나 교육목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하위역량 및** 능력단위 요소 또는 **행동지표 및**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0.00.00.>

**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3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개정 2020.00.00.>**

② 교양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별도의 개발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까지의 과정 설계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와 개발 주기에 있지 않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전년도에 설정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개편한다.

1.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2. 기존 교과목의 명칭 변경
3. **하위역량**,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의 신설 및 변경<개정 2019.12.27., 2020.00.00.>
4. 교과목 이수 학기 변경
5. 교과목 학점 및 시수 변경
6. 기타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③ 교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는 인재양성유형과 산업환경변화, 수요자 의견 등 필요성과 타당성에 기반하여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주관부서는 교무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사의뢰

3. 교육과정 운영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과 및 교육혁신지원센터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표 작성
2. 교육과정 개편요청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 운영<개정 2019.09.19.>

③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개편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과정은 대학의 핵심역량 및 하위역량, 그리고 학과에서 도출한 전공역량 등을 반영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문식교육과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0.00.>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 학점에 현장실습 과목(학점)은 제외 한다.
3. 교육과정은 교양·직업기초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비율은 따로 정한다.
4.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로 구분한다. 다만,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00.00.>  
가. 교양필수/교양선택(직업기초)(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0.00.>  
나. 전공필수/전공선택(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0.00.>
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교과로 편성한다.<개정 2020.00.00.>
6.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 4학점 이내로 개설 할 수 있다.
7. 2개 학과 이상에서 개설하는 동일과목은 같은 학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8.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동일 교과목은 I, II, III, IV 등으로 표시한다.
9. 교직교과는 2과목(4학점)으로 편성한다.
10. 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당 1시간으로 편성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1. 기타 편성원칙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는 학과에서 발의하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여부는 학과에서 제출한 [별표1]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를 대학의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개정 2020.00.00.>

**제8조(위원회)**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2020.00.00.>

1.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역량기반 교육품질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2.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0.00.>  
가. 구성 : 학과 소속 전임교원,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 타 대학의 교수, 인재양성유형과 일치하는 산업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

나. 기능

- 1)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한 사항
- 2)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3)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포함)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09.19.>

**제9조(교과목 이수)** ①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1.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점, 3년제 13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양·직업기초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정규교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19.>

2. 교양·직업기초과목은 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타 학과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9.19.>

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00.00.>

③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①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재입학생의 교과이수는 현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입학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육과정의 변경)** 개발·개편된 교육과정 운영 중 자격증 또는 인증 관련 교과의 변경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

학 과 명		편성학년도	20 학년도
편 성 구 분	NCS기반( ) 현장중심( )	편 성 범 위	개발( ) 개편( )
신 청 예 산	원	예 산 기 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 400,000원 이내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 600,000원 이내
* 기존 배정 예산 외 추가 신청 시 교육혁신지원센터 사전 협의 요망			
용 어 정 의	[관련근거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3조 / 제4조 / 제5조]		
	- 교육과정 개발 : 학과 신설 또는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전반에 걸친 재설계		
	- 교육과정 개편 : 학과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를 제외한 교과목의 신설, 삭제 등 편성 변경 ※ 개편인 경우 이전 개발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며, 이전에 개발한 능력단위(책무)의 변경이 없거나, 교과목 변경이 극히 일부 변경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에 유의		
<b>교육과정 개발/개편 목적</b>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b>교육과정 개발/개편 방향</b>		<아래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작성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과정을 <u>개발( )</u> / <u>개편( )</u>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과장 : (인)			
NCS전담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소속교원 :	(인)

# 융합교육과정 운영규정 제정(안)

## 1. 제안이유

- 융합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편성원칙, 이수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기존 학과 개설 교과목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 관련조항 : 제4조(편성원칙)

나.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 관련조항 : 제5조(이수)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학칙,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무처

라. 기 타 : 없음

붙임 융합교육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융합교육과정 운영규정

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27조의5(융합교육과정)에 의거 융합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융합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융합교육과정이란 학생에게 타 전공영역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개발·개편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편성원칙)** ① 융합교육과정은 학과에서 [별표1]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② 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기존 학과 개설 교과목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과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③ 융합교육과정은 각 학과별 교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④ 융합교육과정은 학칙 및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⑤ 융합교육과정의 명칭은 “트랙”으로 한다.

**제5조(이수)** ① 융합교육과정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이수한다.

② 융합교육과정은 타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다.

③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④ 융합교육과정은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별표2]의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6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융합교육과정 개발 신청서

참여 학과명			개발담당 교수	○ ○ ○ (인)
			개발담당 교수	○ ○ ○ (인)
			개발담당 교수	○ ○ ○ (인)
개발 분야	융합 교육과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융합교육과정명 (트랙명)			인재양성유형명	
교육목표				

▶ 교육과정

학 년 도	학 기	교과목명 (영문명)	시수		학 점	수강제한학과	교과목 주관학과
			이 론	실 습			
2020	2						
2021	1						
합계		0과목	0	0	0	-	-

20    년    월    일

소속학과 전임교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2]

제 20 - 00호

# 이 수 증

성 명 : 학 번 : 생년월일 :  
학 과 : 학 위 명 : 졸업일자 :

교 과 목 명

과 목 번 호

학 점

계

트 랙 명 : 000000트랙

운영기간 :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위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 년 00월 00일

## 국 제 대 학 교 총 장